

예산총칙

제1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	계	8,062,325,769	241,869,773
일반회계	계	6,629,229,260	198,876,878
특별회계	계	1,433,096,509	42,992,895
공기업특별회계	계	341,859,318	10,255,780
① 상수도사업		147,426,513	4,422,795
② 하수도사업		194,432,805	5,832,984
기타특별회계	계	1,091,237,191	32,737,116
① 의료급여기금		474,513,038	14,235,391
② 수질개선		9,356,029	280,681
③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		531,400	15,942
④ 도시개발		372,135	11,164
⑤ 하남3지구도시개발		525,101	15,753
⑥ 택지개발사업		576,949	17,308
⑦ 교통사업		26,628,896	798,867
⑧ 광역교통시설		5,879,840	176,395
⑨ 학교용지부담금		18,343,927	550,318
⑩ 산업단지		1,967,046	59,011
⑪ 중소기업육성기금		80,314,638	2,409,439
⑫ 도시철도사업		240,346,030	7,210,381
⑬ 소	방	231,882,162	6,956,465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“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”와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“해당 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“해당 없음”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“해당 없음”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“11,558,777천원”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“304,900,000천원”으로 한다.

제8조「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」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